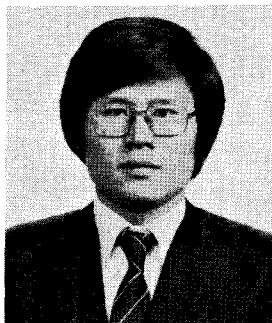


# 영업비밀 침해형태의 사례중심 고찰



尹 宣熙

LL.D.Candidate,  
Faculty of Law.  
KOBE UNIVERSITY

영업비밀의 침해행위형태는 각양각색이나 크게 나누어 보면 절도, 형령, 자기, 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공개(개시)하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내부자에 의한 침해행위, 외부자에 의한 침해행위, 내부자와 공모에 의한 침해행위, 라이센스의 계약 상대방에 의한 침해행위, 하청에 의한 침해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 얻은 영업비밀은 침해행위가가 아니다.(※ 1)

## 第 1 내부자에 의한 침해

내부자에 의한 침해행위는 재직중의 침해행위와 퇴직후의 침해행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재직중인 자에 의한 침해행위

재직중인 자에 의한 침해는, 다시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하는 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개시하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직중인 자에 의한 침해의 형태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하는 행위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한 침해형태는 내부자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와 외부자와 함께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제3 내부자와 공모에 의한 침해부분에서 보기로 한다).

국내에는 아직 내부자에 의해 침해된 판례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에 형법이 적용되었다.

만약에 어떤 직원이 사내의 영업비밀자료를 빼내어 가지고 나와 사외에서 복사한 후返却한 자에 대해서는 절도죄(형법 제 329조)가 적용될 것이며 (※ 2), 회覽된 영업비밀자료를 빼낸 자에게는 업무상 橫領(형법 제 356조)이 적용될 것이고 (※ 3), 빼낸 영업비밀자료를 받은 자는 장물죄(형법 제 362조) (※ 4)가 적용될 것이고, 영업비밀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무단으로 社外의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경우에는 배임죄(형법 제 355조) (※ 5)가 적용될 것

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도 기존형법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자료를 자신의 카메라로 찍어 사외에서 현상할 경우와 그 영업비밀을 기억한 것을 사외의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경우에 과연 그 행위가 형법의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절도죄는 「재물」의 移轉性이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보완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 제16조 제1항 제3호 「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업의 생산방법 기타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때」의 규정이다.

여기서 「기업의 임직원」이란 현재 근무중인 자가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개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 2) 退職한 자에 의한 침해행위

퇴직한 자에 의한 침해행위는 대부분이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퇴직과 동시에 정당하게 얻은 영업비밀을 개시하는 형태이다.

### (1) 산업스파이 유형

처음부터 경쟁업체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위장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일명 산업스파이라고 한다.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는 대일본인쇄산업스파이사건(※ 7), 鐘淪化學산업스파이사건(※ 8), 동양레이온산업스파이사건(※ 9), 新樂비밀자료 유출사건(※ 10), 中樂審申請資料 유출사건(※ 11), 新潟鐵工事件(※ 12) 등이 일본에서 유명한 사건이고, 독일의 판결은 Betriebsspionage 사건(※ 13) 등이 선진국의 산업스파이 사건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유형으로는 헤드 헌터(HEADHUNTER)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그다지 영업비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행할 수 있는 형태이며, 후진국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있다. 물론 선진국이나 기술축적이 많은 기업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유형이다.

### (2) 헤드 헌터 유형

여기서 미국의 헤드 헌터의 사건 중 하나인 IBM v. 디렉스社의 사건(※ 14)을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은 IBM의 컴퓨터와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디렉스사가 테이프, 후로피 디스크, 메모리 등의 관련제품을 IBM보다 싸게, 보다 빠른 스피드로 팔려고 IBM의 관련제품 개발기획 등을 잘 알고 있는 J씨를 빼내어 와서 자사에 이용했다. J씨이외에도 K씨도 빼내어 와서 디렉스사의 상품개발에 활용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BM 提訴에 대해서, 디렉스사는 「IBM이야말로 互換機市場의 개방을 방해하고 있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反論했으나, 1973년 9월, 오클라호마 聯邦地法은 IBM의 주장을 인정하여, 디렉스사에 IBM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서류를 반환할 것과 IBM의 종업원 고용금지,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헤드 헌팅은 기업경쟁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빼낼 의도로 헤드 헌팅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내부자와 공동에 의한 침해행위에 서 보기로 한다.

### (3) 전직에 의한 유형

영업비밀 침해의 대부분이 전직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침해유형도 각양각색이지만, 여기서는 전직하기 전회사의 지위에 따라 크게 나누어 임원이었던 자의 경우와 평직원이었던 자의 경우로 나누어 보면, 평사원이었던 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상법 제198조의 「사원의 경업금지」와 祕密保持義務에 저촉될 것이고, 임원이었던 자가 침해하는 경우는 상법 제397조의 競業禁止義務와 祕密保持義務는 물론이거나와 義管主意義務(※ 15), 충실의무(※ 16)에도 저촉된다.

우리나라의 전직에 의한 침해는 형법을 적용하여 절도죄(※ 17),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다. (※ 18).

여기서 일본의 임원이었던 자의 충실의무의 위반사례를 보기로 한다. 일명 日本設備取締役忠實義務事件 (※ 19)은 일본설비(株)의 前取締였던 자인 D가, 퇴사후 새로운 회사 모아소프트를 설립함과 동시에 일본설비(株)의 종업원 K씨 등을 (株) 모아소프트로 빼내어 왔다.

D는 일본설비의 취체역에 취임할 때, 일본설비(株)의 대표취체역으로부터 입사3년후에 독립시킬 뜻을 들었고, 입사후 컴퓨터사업부장, 사업부장겸 취체역, 일본설비(株)의 자회사의 취체역겸 기술부장을 거쳐 퇴사하였지만, 일본설비의 취체역 재임중에 일본설비(株)의 장래 성 등을 비판하였고, 일본설비(株) 컴퓨터 사업부내의 종업원들에게 설립예정인 (株)모아소프트에 전직할 것을 권유하였다.

일본설비(株)는 D에 대해서 취체역의 충실의무 위반에 근거하여 218만 4천엔의 不當利得返還請求, 忠實義務 위반에 근거하여 5420만 1786엔의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株) 모아소프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5420만 1786엔의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D에 대해서 취체역의 충실의무 위반에 근거한 218만 4천엔의 不當利得返還請求에 대해서는, 취체역의 報酬는 定款이나 株主總會의 決議라는 형태로 주주의 自由裁量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므로 충실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報酬를 받을 자격이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충실의무 위반에 근거하여 5420만 1786엔의 損害賠償請求에 대해서는, 법원은 D의 3년후 독립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日本設備(株)가 지배하고 일본설비(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에限한다고 하였으며, 「일본설비(주)의 컴퓨터사업부처럼 주된 것은 프로그래머 혹은 시스템 엔지니어 등의 인재를 파견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인재야말로 회사의 유일한 資產일 것 이므로 인재의 확보, 교육훈련 등이 회사의 維持, 발전을 위해서의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설비(주)의 취체역인 D가 일본설비(주)의 컴퓨터사업부의 종업원에게 일본설비(주)를

퇴사하여 자기가 설립하려고 하는 同種의 회사 ((주)모아소프트)에 참가하여 줄 것을 勸誘한 것은, 취체역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일부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340만엔을 선고했다.

(주) 모아소프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근거한 5420만 1786엔의 損害賠償請求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리고, 평사원이었던 者자의 경업금지계약에 관한 사례로 原田商店事件 (※ 20)을 보기로 한다.

原告 원전상점은 廣島백화점내에서 부인복지를 판매하는 가게이고, 이 원전상점이 여점원인 피고Y를 고용할 때에, 퇴직후 동백화점내의 타 복지점에 한하여 취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그 후 피고Y는 원전상점에서 解雇된 후 동백화점내의 타복지점에 再就職했기 때문에, 원고 원전상점은 경업금지계약 위반을 들어 廣島지방법원에 返處分을 신청한 사건이다(그러나, 제1심은 返處分申請을 却下, 원고 控訴).

법원은, 피고Y는 「특별한 지식, 기능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부인복지 판매의 보조」를 했을 뿐이고, 「解雇되면 용이하게 취직할 수 있는 곳도 없기에 생계의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자에 대해서 취직의 제한을 약속하게 하는 것은 「설령 장소를 廣島백화점내로 한정하였다고 해도, 피고의 생계를 위협한다던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우려가 충분히 있고, 원고의 이익을 보호 할 필요성에 대해 特段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公序良俗에 反하므로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判示하고, 控訴를 却下했다.

이상의 두사례를 보았으나, 퇴직자에 의한 침해형태는 각양각색이며 판례도 많이 있다.

그러나 任職員에게 경업금지의무 또는 祕密保持義務契約을 課하면 모두가 영업비밀로保護되는 것은 아니다. 임직원에게 퇴임후 경업금지의무 또는 비밀보지의무를 課하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무효라고 判示한 예가 위의 케

이스인 원전상점사건이고, 합리적인範圍內라고 인정한 예가 일본警報裝置事件(※ 21) 및 화세고·재펜·리미테드사건(※ 22)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하에서는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법규가 없어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보완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 제16조 제1항 제3호 「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업의 생산방법 기타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때」의 규정이다. 「임직원이었던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前企業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개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이러한 행위는 영업비밀 보유자의告訴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동법 동조 제2항), 또 양 당사자가 영업비밀 침해여부에 대한 다툼을 민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23)

## 第2 외부자에 의한 침해

외부자에 의한 침해형태는 내부자와 공모에 의한 침해형태(이 부분은 제3 내부자와 공모에 의한 침해에서 보기로 한다)와 순수한 외부자에 의한 침해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초안에는, 외부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의 절도죄, 주거침입죄, 장물수수죄, 고매죄 등을 적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월간「지적재산」 제51호 형법에 의한 보호를 참고 바란다.

여기서 외부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는 포항제철의 「84년도의 실행생산계획서」 유출 사건(※ 24)이 있으나 화해에 의해 해결된 사례이고, 법적인 문제로 비화된 외국의 예로는 DUPONT 航空寫眞 摄影사건(※ 25)이 유명하므로 여기서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은 크리스트파라는 카메라멘이 身元

不明의 자로부터 依賴를 받(※ 26), 1969년 3월 19일 건설중인 듀퐁사의 메틸알콜(Methanol) 공장을 空中撮影하여, 현상후 16장의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냈다. 이날 듀퐁사가 건설중인 듀퐁사의 메틸 알콜(Methanol) 공장에 있던 종업원이 이상하게 여겨 조사한 결과,被告 크리스트파의 신원과 행위가 판명되었지만 피고 크리스트파는 의뢰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듀퐁사는 메틸 알콜의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이어서 엄증히 관리하고 있었지만, 건설중인 공장의 上空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공장의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전문가가 보면 비밀제조공정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被告 크리스트파가 행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손해배상과 이미 찍은 사진의 回收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被告 크리스트파는 자신이 행한 행위는 公共의 공간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航空規則을 침해하지 않았고, 또 듀퐁사와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으며, 사기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投弁했다.

이 소송은 지법에서 부정행위 리스트ей먼트의 원칙을 채용하여 피고에게 管轄의 投弁을 부정하였고, 피고에게 제3자 의뢰인을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크리스트파는 控訴하였고棄訴되었다.

본 판결은 외부자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한 영업비밀의 관리한계 등을 가르쳐 준 판결이다.

## 第3 내부자와 共謀에 의한 침해

내부자와 共謀에 의한 침해형태는 내부자가 부정개시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 경우 외부자의 의뢰에 의한 경우와 내부자의 부정개시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제1의 내부자에 의한 침해형태를 참고 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전자의 사례인 「K실업 산업스파이 사건」(※ 26)을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은 인조피혁 제조업체인 K실업이 3년간 십여억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한 인조피혁 제조장비를, 경쟁업체의 상무가 K실업에 근

무하는 기능공과 공모하여, 쉬는 날 기능공이 숙직하는 것을 이용 경쟁업체의 상무가 침입하여, K실업이 3년간 십여억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한 인조피혁 제조장비를 사진촬영하여 유출한 사건이다.

K실업은 경쟁업체의 상무와 전K실업 기능공을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방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경쟁업체의 상무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전K실업 기능공에게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본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경쟁업체의 상무에 대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절도죄는 재물의 이동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형법만으로는 자기 카메라로 촬영하여 현상한 영업비밀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일 것이다.

#### 제4 라이센스계약의 상대방에 의한 침해

영업비밀의 라이센스계약은 특히 라이센스계약과는 달리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기 전, 즉 계약교섭중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라이센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되는 영업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할 것이며, 라이센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중요한 영업비밀을 개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체스도론(チエストロソ) 사건(※ 27)이 있고, 계약체결 후의 사례로는 리바카운터(リバーウォーター)사건(※ 28)이 있는데 여기서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은, 수력과 円丹을 이용한 음식물 운반시스템의 제조기술 供與 및 그 시설의施工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리바카운터는 1978년 12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노우하우 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첫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제조기술(노우하우)을 공여하고, 그 시설을 시공한다. 둘째, 피고는 그 댓가로 100만円을 지불한다. 셋째, 피고는, 원고의 承認을 얻은 피고의 점포에 한해서만 본건의 노우하우에 근거하여 본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위의 계약에 근거하여 본건의 노우

하우를 공여하고 시설을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1979년 7월경에 점포를 신설하고 원고의 노우하우를 무단으로 사용, 제3자에게 시설을 시공케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본건의 계약시설의 사용한정조항에 반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라이센스계약에 의한 침해는 형사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밖에 보호받지 못하였으나, 우리나라로 이변 개정에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다.

#### 제5 하청에 의한 침해

하청에 의한 침해형태는, 정당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개시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개시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아테나(アテナ) 사건(日經 ヌグロウヒル사 사건이라고도 함)(※ 29)을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은, 원고 X(아테나사)는 A(日經 ヌグロウヒル사)가 발행하는 잡지를 구독자에게 발송하는 업무를 청부하여, A사로 부터 약 8만2천여명의 주소·이름이 들어 있는 컴퓨터용 자기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었다.

원고X사는 동자기테이프를 가다카나(カナ 문자화)로 하여 종이에다가 인쇄하는 작업을 Y사에 하청을 주었고, Y사의 종업원이 동자기테이프를 B사의 컴퓨터에 의해 프린트 아웃 작업을 행하였는데 보관하고 있던 21시간 사이에 어떤 자에 의해 복사되어, B사에서 C사로 팔려 넘어 갔다.

이로 인해, X사는 사회적인 신용이 실추되어, 동사에 맡겨질 예정이던 업무 등이 사회적인 신용의 실추로 인해 업무취급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X사는 Y사에게 자기테이프 보관중에 부정하게 복사된 것은, 테이프 보관에 있어서 요구되는 善良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기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Y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X의 청구를 받아 들여 Y에게 위자료 150만円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 주1) 정식명은, Chicage Lock Co. v. Fanberg 676F. 2d 400, 216 USPQ189(1982. 5)
- 주2)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55. 2. 14 判例 時報 957 號 118P ; 우리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3) 神戸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56. 3. 27 判例 時報 1012 號 35P ; 우리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4) 神戸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56. 3. 27 判例 時報 1012 號 35P ; 우리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5)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60. 3. 6 判例 時報 1147 號 162P ; 우리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6)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 제16조 제1항
- 주7)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40. 6. 26 判例 時報 419 號 14P
- 주8) 대판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42. 5. 31 判例 時報 494 號 74P
- 주9) 신호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56. 3. 27 判例 時報 1012 號 35P
- 주10)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59. 6. 1 判例 タイム 533 號 255P
- 주11)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59. 6. 28 刑裁月報 16卷 5·6 號 76P
- 주12)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60. 2. 13 判例時報 1146 號 23P, 判例タイム 552 號 137P
- 주13) GRUR 1973, 484(1973. 3. 16 BGH Urt. v.)
- 주14) 정식명은 Telex Corp. and Telex Com-

- puter Products, Inc. v. IBM Corp. 510 F. 2d 894(1975. 1. 28) ; 367 F. Supp. 258(1973. 10 10)
- 주15) 민법 제681조와 상법 제382조가 적용된다.
- 주16) 상법 제17조
- 주17) x선 촬영 조영제 제조기술 관련서류 유출사건(서울지법 1987. 4)  
「T제약의 1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X선 촬영 조영제 “바리탑”의 제조기술관련서류 및 판매관계 영업장부를 이 회사의 개발이사로 있던 K씨가 S제약회사로 이직하면서 동서류를 유출하였는바, K씨는 서울 지검에서 절도죄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특허청 「영업비밀, 왜 보호하여야 하는가?」(1991) 11P를 인용한 것이다.
- 주18) 안경점의 거래처 명단 유출 사건(서울지법 1990. 2)  
「서울 종로구 N안경점의 영업부장으로 있던 U씨는 경쟁업체인 D안경점으로 전직하기 위하여 그만두면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N안경점의 거래처 명단을 몰래 출력시켜 유출한 사건이 있었는바, U씨는 서울지법에서 전산망 보급과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특허청 「영업비밀, 왜 보호하여야 하는가?」(1991) 11P를 인용한 것이다.
- 주19)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63. 3. 30 判例時報 1272 號 23P
- 주20) 광도고등재판소 판결 昭和 32. 8. 28 判例時報 132 號 18P
- 주21)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42. 12. 25 判例時報 520 號 61P
- 주22) 금량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45. 10. 23 判例タイム 634 號 150P  
이 판결의 요점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경업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계약인가 아닌가는 ① 제한의 기간, ② 장소적 범위, ③ 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 대상의 유무 등에 대해 債權者의 이익, 채무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이익(독점집중의 우려, 그것에 따른 일반소비자의 이익)의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23) 특허청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입법 초안」 (1991) 32P

주24) P 제철의 「84년도의 실행생산계획서」 유출사건(1984년 1월)

J국의 M상사 한국주재원 B씨가 거래처인 P제철에 업무차 방문중 책상위에 놓여있던 대외비 기밀문서인 1984년도 실행생산 계획서 1권을 서류가방에 몰래 넣고 나와 복사한 다음 J국으로 보내려다

가 K공항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으나, 이 사건은 법적인 분쟁으로는 비화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특허청 「영업비밀, 왜 보호하여야 하는가?」 (1991) 11P를 인용한 것이다.

주25) 정식사건명은 「E. I. du Pont de Nemours & Co. Inc. v. Christopher et al.」 166 USPQ 422(1973. 7. 20)

주26)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방향 및 입법정책에 관한 세미나」 (1990. 11. 21) 103P

주27)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63. 7. 1 判例時報 634 號 129P

주28) 浦和地方法院 판결 昭和 58. 6. 24 判例タイム 509 號 177P

주29)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昭和 48. 2. 19 判例時報 713 號 83P <♣>

창



간

發行人 金生基  
編輯人

印刷人 李平遠  
發行所 韓國發明特許協會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143-19  
郵便番號 135-090 電話 : 557-1077~8

91년 9월

격월간  
**特許管理情報(비매품)**

신간안내

**英·韓產業財產權(工業所有權)用語集**

규격 : 국판 320면  
발간 : 한국발명특허협회  
가격 : 5,000원